

제 100 회      **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**      제 3 호(부록)

거창군의회사무과

목      차

1.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 ..... 1 면

## □ 세입·세출예산 결산현황

### 1. 세입예산

가. 일반회계(생략)

나. 특별회계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예산현액	징수 결정액	수납액	미수납액	미수납액처리	
					결손처분	이월
계	10,695	11,785	9,961	1,824	80	1,744
상 수 도	3,681	3,450	3,420	30		30
주 택 사 업	58	56	56			
농업인소득지원기금	2,728	2,735	2,657	78		78
농공단지조성사업	3,119	4,305	2,674	1,631	80	1,551
주 차 장 관 리	1,109	1,239	1,154	85		85

### 2. 세출예산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예 산	예산현액	지출원인 행 위 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
합 계	계	222,994	154,129	90,656	124,074	8,264
	일반	212,299	149,113	86,252	122,862	3,185
	특별	10,695	5,016	4,404	1,212	5,079
산 업 과	계	13,397	9,673	9,232	441	3,724
	일반	10,669	9,658	9,217	441	1,011
	특별	2,728	15	15	0	2,713
지역경제과	계	8,671	5,723	5,570	848	2,253
	일반	4,443	3,262	3,109	848	486
	특별	4,228	2,461	2,461		1,767
산 립 과	일반	7,008	6,585	5,592	993	423
건 설 과	일반	150,416	95,108	41,603	108,202	611
도시환경과	계	28,746	23,951	18,774	9,560	412
	일반	28,688	23,895	18,718	9,560	410
	특별	58	56	56		2
농업기술센터	일반	1,976	1,868	1,608	260	108
수도사업소	계	12,780	11,221	8,277	3,770	733
	일반	9,099	8,737	6,405	2,558	136
	특별	3,681	2,484	1,872	1,212	597

### 3. 기 금

#### 가. 연도말 현재액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적 립 액			사 용 액	연도말잔액
	계	전년도까지	당해연도		
계	542	367	175	131	411
재해대책기금	459	300	159	131	328
재난관리기금	83	67	16		83

#### 나. 운용내역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수 입					지 출		
	계	출연금	보조금	이자	전년도 이월금	계	고유목적 사업비	재적립금
계	542	80	91	4	367	542	131	411
재해대책기금	459	64	91	4	300	459	131	328
재난관리기금	83	16			67	83		83

### 4. 채 권 액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이행기간도래액		미도래액
		원 금	이 자	원 금
합 계	4,456,763	993,003	565,813	2,897,947
경남무역 상설전시관 등 6건 임차보증금	384,965	0	0	384,965
주택사업채권	258,273	4,444	3,798	250,031
농공단지 특별회계 채권	3,813,525	988,559	562,015	2,262,951

## 5. 채 무 액

(단위:천원)

구 분		전 년 도 말 현 재 액	당 해 연 도 발 생 액	당 해 연 도 소 멸 액	당 해 연 도 말 잔 액
합 계		8,319,341	0	1,937,689	6,381,652
특별회계	상 수 도	3,025,000	0	93,400	2,931,600
	주택사업	294,341	0	44,289	250,052
	농공단지	5,000,000	0	1,800,000	3,200,000

### □ 검토내용

#### ( 산업 과 )

- 농업인자녀장학금 과다계상액 미삭감 (부속서류 p75)
  - 당초 예산액 국·도비 포함 294,123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집행은 180,198천원이고 113,924천원의 불용액 중 108,363천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음
  - 동 사업은 국·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02년 11월 9일 경상남도로부터 변경 내시가 시달되었음에도 제3회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지 아니하였음
- 논농업직불제 및 수매관련 조작비 (부속서류 p77)
  - 논농업직불제 262,800천원과 수매관련 조작비 135,000천원 등 총 364,012천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전액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 처리된 것으로 돼 있음
  - 추곡 수매 시기가 10~11월중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고 중앙으로부터 현금지원에서 현물지원으로 정책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봄

- 별도 다른 예산으로 현물지원을 한 것인지 여부와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

## ( 지역경제과 )

- **시장현대화사업관련**(명시이월사업비) (부속서류 p83)
  - 상공관리, 자체사업, 시설비 100,975천원은 2001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비로서 2002년도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음
  - 동 사업비의 집행목적과 미집행사유 발생시기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.
- **교통행정 자체사업의 집행사유 미발생** (부속서류 p88)
  - 운수업계 보조금 27,286천원, 시설비 66,134천원 등 총 93,420천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음
  -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
- **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** (부속서류 p97)
  - 민간자본보조(402-01) 127,226천원과 지역개발기금융자금(601-01) 200,000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음
  - 집행사유 미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
- **공공근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** (부속서류 p167)
  - 국·도비 포함 334,61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.
  - 집행잔액, 즉,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
  - 국·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했는지, 반납하지 아니하는 사업비로 다음연도 집행할 예산이라면 명시이월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

**( 농업기술센터 )**

○ **봉산물 프로폴리스 생산을 통한 기능성 제품 개발** (부속서류 p165)

- 동사업은 프로폴리스 성분 분석 및 제품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과 프로폴리스 채취 종봉 구입비, 프로폴리스 처리용 장비구입비 등임
- 사업비 50,000천원 전액을 민간자본보조로 농가에 보조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으나 이 중 18,000천원은 연구개발비는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과업지시 등 행정적으로 조치하면서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에게 보조금으로 지출하여 집행하였고, 특허출원비 2,766,000원은 일반운영비 또는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성질이며, 연구용역을 맡은 경상대학교 심기환 교수가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참석한 행사에 3차례에 걸쳐 150,000원의 회의비를 집행한 바 있으나, 용역을 맡은 교수가 현장출장의 경비는 용역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회계질서를 흐트리며 집행토록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봄
- 2002년도 예산안 심의시 사항별 설명서 또는 주요사업 조서상 세부 사업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였다면 발견할 수 있었던 사항임

○ **보조금의 자부담 불균형** (부속서류 p164 ~ 165)

(단위:천원)

사업명	보 조 사업자	소요사업비					사업내용
		계	국비	도비	군비	자부담	
딸기우량묘 생산시범	박중포	22,823	10,000		10,000	2,823 (12.4%)	저바이러스 우량 종묘생산시설(20ha)
수출딸기 경쟁력 제고	이재운	49,000		20,000	20,000	9,009 (18.4%)	고품질딸기생산 기반조성(6동)
고랭지딸기 우량묘생산	조창환	28,006			14,000	14,006 (50%)	고랭지딸기 우량 무병묘 증식(5동)

- 위 사업내역은 하우스 골조(파이프), 하우스 비닐, 파이프 시공인건비

딸기묘 등 대부분 사업내역이 비슷한 사업임에도 국비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전체사업비의 12.4%이고, 도비지원사업은 자부담이 18.4%  
군 자체사업은 50%를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음.

- 농가 지원사업은 일정한 자부담을 원칙으로 보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, 유사한 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고 보며,
- 대상농가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는지와 자부담 비율을 다르게 하여 집행한 이유에 대한 설명